#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의 안 번 호 4323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한류기본법안	2200895	임오경의원 등 17인	'24.6.25.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한류산업진흥 법안	2202950	박정하의원 등 12인	'24.8.1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 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 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3조제2호).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8조).
- 마.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에 제출(안 제9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 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 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류"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해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 4. "한류사업자"란 한류산업 또는 한류연관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6조(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한류산업 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

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② 국가는 한류정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1. 한류산업 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 연구
  - 3. 한류산업 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 4.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1.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 2. 제9조의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 3. 한류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결과
- 4. 해외 권역별 한류산업 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 5. 한류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 6.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 ③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2.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
  - 3.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 4. 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 5.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 운영
  - 6. 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7.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8. 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등록·출원을 지원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 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

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16조(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 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협회의 설립) ① 한류사업자는 한류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회의 설립절차,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